〈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카페리빈』정보공개서

(주)리빈코리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리빈코리아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 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	개서 등록 번호	20160439
정보공개시 최초 등록일 및 최	•	정보공	개서 최초 등록일	2016-05-12
		정보공	개서 최종 등록일	2024-01-08
	『카페리	빈』가맹사업	본부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	울특별시 중-	구 동호로 191, 506호(신	신당동, 선일빌딩)
전화번호	02-2234-7622		팩스번호	02-2234-6557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본부		담당자 전화번호	02-2234-7622
홈페이지	www.lebeankorea.com		담당자 이메일	lebeankorea@naver.com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별첨 서류
-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리빈코리아	영업표지		카페리빈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1, 506호(신당동, 선일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3.09.16	1993.10.20	전종남	02-22	34-7622	02-2234-6557	
법인등록번호	110111-0972574	사업자등록	번호	20:	3-81-53600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전종남/ 사 (주)리빈코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1, 506호(신당동, 선일빌딩)			
대표이사		카페리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구)디근포디의		전종남	02-2234-7622	02-2234-655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고 제 충 ,		서울특별시 중구	나 동호로 191, 506호(신당동, 선일빌딩)	
사내이사	전재훈/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46249		전종남	02-2234-7622	02-2234-655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		영업표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 소 - 동호로 191, 506호(신당동, 선일빌딩)	
관계 사내이사	이해광/	영업표지 카페리빈	서울특별시 중구	·	신당동, 선일빌딩) 대표팩스번호	
				· - 동호로 191, 506호(
	이해광/		대표자	· 동호로 191, 506호(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사내이사	이해광/ (주)리빈코리아 이름/상호	카페리빈	대표자 전종남	동호로 191, 506호(대표전화번호 02-2234-7622	대표팩스번호 02-2234-6557	
사내이사	이해광/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대표자 전종남	· 동호로 191, 506호(대표전화번호 02-2234-7622 주 소	대표팩스번호 02-2234-6557	

-1-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카페리빈』	-
상 호	『카페리빈』 <u>점</u>	-
상표(서비스표)	HIGHEST OUALITY CAFFE LEBEAN GURLATEL Serve govern	제43류 등록 41-0337138 (2015.11.04.)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600,283	2,589,513	10,770	2,358,220	-69,180	-114,831
2022년	3,031,695	3,002,434	29,261	2,907,833	129,527	18,747
2023년)23년 2,902,801 2,856,622		46,179	46,179 2,903,923		16,917
☞ 위 재무상황의 근거는 별첨의 재무제표입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위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AL Z	혀지이		사업경력				
이름	현 직위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전종남	대표이사	1993.09.16. ~ 현재	(주)리빈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전재훈	사내이사	2009.09.16. ~ 현재	(주)리빈코리아 사내이사	회사 관리			
이해광	사내이사	2015.12.28. ~ 현재	(주)리빈코리아 사내이사	회사 관리			
이숙	감사	1993.09.16. ~ 현재	(주)리빈코리아 감사	회사 감사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2023년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년 12월 31일	3	1	2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상표(서비스표)	권리 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CAFFE LEBEAN CAFFE LEBEAN	제43류	등록 2015.11.04	등록번호 41-0337138	㈜리빈코리아	기간 만료일 2025.11.04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카페리빈』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4년 07월 03일(1호점 오픈일)

*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년 10월 07일

2.『카페리빈』연혁

☞『카페리빈』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전종남	2014년 7월 3일 ~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1, 506호(신당동, 선일빌딩)

3.『카페리빈』업종

анті	업종		
영업표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카페리빈	커피	커피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별 가 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4	16	8	21	13	8	19	12	7	
서울	20	12	8	17	10	7	15	9	6	
부산	-	-	-	-	-	-	-	-	-	
대구	1	-	-	1	-	1	1	-	1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1	-	-	-	-	1	-	-	-	
경기	2	2	-	2	2	1	2	2	-	
강원	1	-	-	1	-	1	-	-	-	
충북	1	1	-	1	-	1	-	-	-	
충남	-	-	-	-	-	1	-	-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ナ)ロセンログ	'기페니진」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전남 경북	-	-	-	-	-	-	-	-	-
경남 제주	-	-	-	-	-	-	-	-	-
제주	-	-	-	-	-	-	-	-	-

-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 이 있는 가맹점의 수
-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16	3	-	3	-	16
2022년	16	1	-	4	-	13
2023년	13	-	-	1	-	12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면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의 총 수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7.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상	한	하	·한	
지역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비고
		매출액	3.3m²당	0 -	3.3m ² 당		3.3m²당	
전체	12	94,739	4,300	366,653	16,804	1,158	59	12곳 산정
서울	9	101,957	7,192	366,653	16,804	1,158	59	9곳 산정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2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위 매출액 산정 자료는 가맹점별 물품 주문량 대비 매출액을 추정하여 기재하였으며, 당사의 총 12 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명심하여야 합니다.

8. [카페리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카페리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2	2,011일

- * 위 평균영업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 [다만,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을 확인할 수 없는 1개 가맹점 (갤러리아포레점) 은 최초 오픈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로 산정] 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 말『카페리빈』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 기재하였습니다. 근거는 별첨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딘	위 : 천원, 부기	'\세 미포함)	비고
TE	구민	15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17
합계	-	-	206	206	-	비공개
광고	비공개	비공개	206	206	-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	-	-	-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예치기관의 소재지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하나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KEB하나은행 본점(을지로 2가 181, KEB하나은행 본점)	1544-3000

2) 가맹금 예치절차

☞ 귀하는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7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카페리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8,800	-	-	-	(예외조건)
가맹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개점 행사비	1,1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행사비로 비용소요	미행사시 반환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5,000	-	-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2,700	-
가맹비	3,3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3,300	부가세포함
개점 행사비	1,1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 ² 당 비용	지급 기한	비고
합계	-	66,550	3,327	-	약 66m²(약20평)기준
인테리어	가맹본부			시공 시작 3일 전	
간판	가맹본부	39,600	1,980	설치 3일 전	
의탁자 등	가맹본부			입고 3일 전	
설비/기기	가맹본부	17,600	880	입고 3일 전	시세에 따라
집기/비품	자율	3,300	-	입고 3일 전	변동 가능
POS	가맹본부	1,650	-	설치 3일 전	
홍보 인쇄물	가맹본부	550	-	입고 3일 전	
초도 물품	가맹본부	3,850	192	입고 3일 전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고, 당사의 감리 대가로 3.3㎡ 당 금삼십삼만 원(₩330,000 / VAT포함)을 공사 착수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 (2) 필수 구입 내역 :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 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간판, 영업 신고, 어닝, 철거비용, 테라스 사업자 등록 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실외, 배관·공사, 가스/소방·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CCTV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 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역 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11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월매출액 1.1%	매월 30일	반환 안 됨	소멸성	영업표지 사용및 영업지역 보장대가
광고·판촉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반환 안 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	-	-	경우에 따라 실비 지급
점포환경 개선비용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 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은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혐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1) 귀하가 운영하는 『카페리빈』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13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1)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 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 원상회복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 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4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 래대상물의 품목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 메뉴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중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품목과 거래상대방 · 공급가격 · 공급규격 등은 상이해질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된 공급품목을 반드시 지정된 사업자에게 공급받아야 함을 알립니다.

<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 >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 메뉴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중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품목과 거래상대방·공급가격·공급규격 등은 상이해질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된 공급품목을 반드시 지정된 사업자에게 공급받아야 함을 알립니다.
-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15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카페리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 해당 없음: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16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 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1.01 기준)

			(2010:01:01 12)	
	상품 및 서비스 (메뉴)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워:원)	
아메리카노 HOT / ICE	2,500 / 3,000	루이보스 티 HOT / ICE	4,500 / 5,000	
카페라테 HOT / ICE	3,000 / 3,500	페퍼민트 티 HOT / ICE	4,500 / 5,000	
카라멜 마키아또 HOT / ICE	3,500 / 4,000	카모마일 티 HOT / ICE	4,500 / 5,000	
바닐라 라테 HOT / ICE	3,500 / 4,000	얼그레이 티 HOT / ICE	4,500 / 5,000	
에스프레소	3,500	로얄 밀크티 HOT / ICE	4,500 / 5,000	
카푸치노 HOT / ICE	3,000 / 3,500	토마토 주스	6,000	
핫초코 HOT / ICE	3,000 / 3,500	청포도 주스	6,000	
오곡라떼 HOT / ICE	4,500 / 5,000	제철 과일주스	6,000	
망고라떼	5,000	자몽 에이드	4,500	
딸기 스무디	5,000	레몬에이드	4,500	
블루베리 스무디	5,000	오렌지 에이드	4,500	
망고 스무디	6,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7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식품서비스업	카페리빈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인 경우 특수상권 내		
특수상권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약 반경 500M 단, 계약체결시·계약체결 이후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설정 한 영업지역 내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 차역, 지하철,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시장 등 특수상권이 있는 경우 그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과 무관 하게 당사가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	별도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카페리빈』 영업표 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 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 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나 경영상황의 변화 등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리빈샾	http://www.lebeanshop.co.kr/	워두커피	온라인 판매
돈다인	현대h몰	www.hyundaihmall.com	권무기피	온다인 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 19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	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40.83%	59.14%	0.03%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7.9%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 『카페리빈』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7007-1 000 71-1 71- 71-
ľ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П	ОТ

가매보브이 저다하 게야 개시ㅇ그 거전 사으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 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⑧	D-180 ~ D-90
®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 21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 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4조 3항)

- 1. '을'이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 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2. '을'이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3.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4.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 7. '갑'이 '을'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 8.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9. '갑' 또는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제22조)]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제22조 1항)

-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2.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3. '을'이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 4.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 6. '을'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 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을'이 경업을 하거나 '을'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

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 8. '을'이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 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9. '을'이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10. '을'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 하는 경 우
- 11. '을'이 노후 된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2.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1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1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6. '을'이 '갑'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17.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8.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 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19.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 반하는 경우
- 20.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 할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 34조 4항)

-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귀하가「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기 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처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물품공급 즉시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제22조 2항)

- 1. '을'이 파산한 경우
-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
- 3. '을'이 강제집행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물품공급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을'이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기계의 다

	모든 권리·의무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 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 권 상속 완료
--	----------	---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 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 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카페리빈]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 동안은 [카페리빈]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점포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카페리빈]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식품서비스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8.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25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주 6일 이상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3명	자율	약66m²(약20평) 기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	----	-------	------	-------	----

『카페리빈』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광고기획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30%	총 광고비의 70%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수령 후 7일이내 지급	
	할인행사	총 판촉비의 20%	총 판촉비의 80%	ıı	"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20%	증정상품 출하가 80%	ıı	11
판촉 전체 행사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20%	판촉물 제작비용 80%	. "	"
	기타 전체행사	행사에 따	라 유동적	и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	없음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당해 가맹점 점포에서 『카페리빈』 사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당사에게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남은 금워을 반환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금으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약금으로 당사에게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영업양도)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일천 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지하는 경우와 제34조(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임의중단 및 폐업처리하거나 『카페리빈』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일천만원 (\(\pmu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8.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일 천만원(\(\psi 10,000,000\(\text{D})\)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10.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11.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9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66m²(약2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0일 내외	1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4)번 항목 참조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30 -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 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31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o간판교체 비용 o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o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o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32 -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원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사(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문의: 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자원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3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협의	3,300	-	
개점 후 교육	추후 공지	당사 부담(예외 있음)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5 지하 1층
2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 지하 1층
3	서울	현대백화점 천호점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 지하 1층
4	서울	현대백화점 미아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 지하 1층
5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지하 2층
6	서울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지하 1층
7	서울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6개월	-

^{*}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직영점수로 나눈 기간을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 였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35,20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 35 -

(주)리빈코리아 『카페리빈』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2-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6 -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가장금에시한경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계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 예금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치	기관의 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 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장

귀하